

	<h1 style="margin: 0;">직제 규칙</h1>		규정번호	6-3-3
			제정일자	2007.02.14
			개정일자	2012.05.03
			개정번호	Ver.3 총페이지 2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동양미래대학교산학협력단(이하 “산학협력단”이라 한다)의 직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산학협력단의 직제는 법령, 정관 및 각종 규정에 정해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.

제3조(정원) 산학협력단 직원의 정원은 단장이 정한다.

제4조(사무분장) 이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 부서의 사무분장은 단장이 정한다.

제 2 장 단 장

제5조(단장) ① 단장은 산학협력단을 대표하고, 업무를 총괄하며 교직원을 지휘·감독하고 지도한다.

② 단장은 산학협력단 정관 및 직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교직원의 임면과 보직을 제청한다.

제6조(부단장) ① 산학협력단에는 부단장을 둘 수 있다.

② 부단장은 산업기술연구소 소장으로 보하며,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.

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7조(하부조직) ① 산학협력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.

② 하부조직의 직원으로 대학의 교직원을 겸무 발령 시 소정액의 겸무수당을 지급 한다.

③ 산학협력단 겸무수당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제 3 장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

제8조(부속기관) 산학협력단에는 산업기술연구소, 창업보육센터 등의 부속기관을 둘 수 있으며 부속기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.

제9조(기타 부속기관, 부설연구소) 단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를

설치할 수 있다.

제10조(위임 전결) 위임전결은 총장이 따로 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07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2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2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.